금융위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입법예고

김혜란 연구원

■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의 업종 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 등을 위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안을 제정하고, 16일 입법예고함.

-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통일적 ·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음.
- 또한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CEO 공백상태 장기화 사례 및 저축은행 감사위원회 · 상근감시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 등이 법 제정 요인이 됨.

■ 이번 제정안은 금융회사 6개 업권에 적용되며, 경영진에 대한 감시강화로 경영진 권한이 줄어드는 대신 사외이사의 권한과 기능은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.

- 제정안은 은행, 금융투자업자, 보험회사, 상호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(카드회사, 캐피탈사), 금융지주회사 등 6개 업권에 적용되며,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등 일부 규정 적용을 면제함.
- 업무집행책임자(현행, 부행장 등 미등기 임원) 임면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임직원 제재 시 향후 임원선임제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토록 하여 경영진의 권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.
- 반면, 이사회에서 외부 감사 전문가인 사외이사 수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의무화되어 사외이사의 권한은 강화되고, 냉각기간(2년 → 3년) 확대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규정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임.

〈표 1〉 제정안 주요 내용

내용	
1.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강화	•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및 이사회의 심의·의결 권한 명시 • 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의결
2.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	• 상근임원직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 확대(2년 → 3년) 및 지주회사 상근임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(은행 → 전업권 확대) •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참여 금지 및 자기투표 금지 •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규정
3.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	•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용 • 감사위원 선임 시 3% 초과 의결권제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
4. 업무집행책임자 규율	• 사실상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는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 부과
5. 임원자격제한 제도 개선	• 향후 임원선임제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
6. 임직원 겸직제도 개선	•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무 종사 금지 •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 보고 또는 승인
7.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	•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공시
8. 내부통제 제도 개선	• 준법감시인의 지위향상 및 비례원칙을 고려한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정비
9. 위험관리 및 보수체계 개선	•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·위험관리책임자 도입 • 보수위원회 및 보수원칙 근거 마련 • 보수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·공시
10. 대주주 적격성 규율	• (대주주 변경승인) 현행과 동일하게 승인, 불가피한 경우 사후신청 허용 • (대주주 자격유지) 주기적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유지의무

■ 전문가와 업계는 법 제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지나치게 세밀한 법 제정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음.

- 업종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및 예금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진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큰 틀에서 규제책을 내놓고 전체 흐름에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.

(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, 12/15)